

2008년도 양도소득세제도 개정내용해설(II)

- 조세특례제한법 ·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

전 재 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행정사무관



I. 머리말

정부에서는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신설하였다.

또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폐지 등과 같이 지난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각종 비과세 · 감면제도중 정비가 필요한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과도하지 않도록 세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과세제도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제지원

1.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가. 개정취지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채권보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상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2009년 12월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보상분 : 양도소득세 10% 감면 - 채권보상분 : 양도소득세 15%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0%로 상향 조정 <p>〈지원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보상채권을 만기보유하기로 하는 특약체결자에 한하여 적용 <p>※ 보상채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개설된 예탁계좌에 예탁함으로써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는 특약</p> <p>〈사후관리 및 추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예탁자에 대한 보상채권지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 예탁자의 채권이체 등 위반사실 발생시 <p>① 사업시행자는 국세청에 통보</p> <p>※ 보상채권의 계좌이체 등 특약 체결자의 특약 위반 사실을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p> <p>② 국세청은 추가감면분(5% 부분) 및 이자상당액(1일 0.03% 이자가산) 추징</p> <p>〈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신청시 특약체결 및 예탁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예 : 증권예탁결제원의 예탁확인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보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

가. 개정취지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대토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세이연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의 정의에 규정된 방식(조특법 §2 ① 7호)과 동일하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며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토보상 및 현금보상 전환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신설</p> <p><지원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토보상 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p><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이연 방법 : 취득가액 차감방식(기존 부동산 수용시 과세이연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대토 양도시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이연 금액 $(\text{기존 부동산 양도차익}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액}) \times \text{대토보상 상당액} \div \text{총 보상액}$ <p>※ 대토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대토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토 양도시 과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대토 양도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 등 과세체계 일괄 적용 · 대토 전후의 부동산이 동종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대토에 관한 과세체계 일괄 적용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시 종과대상이라도 대토 양도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종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금액에 대해서도 종과 배제 <p>※ 비사업용 토지, 1세대1주택 등</p>

종 전	개 정
<p>〈신 설〉</p>	<p>〈사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현금보상 전환시 그 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 과세이연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 0.03%) 납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 전매금지 위반으로 현금보상 전환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내 대토 처분(단,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보유 간주) - 과세이연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미기재 · 전매금지 위반 이외의 사유로 현금보상 전환 <p>※ 전매금지 위반 이외의 사유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 등(토지보상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토를 증여하거나 상속 <p>〈서류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상자는 과세표준신고시 과세이연 신청서에 대토보상신청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 사업시행자는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등기부등본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보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 대토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 대토 양도시 과세체계 : 대토 양도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일괄적용(기획재정부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제도는 최초 양도는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최종 양도만 과세대상으로 보는 방식

※ 최초의 양도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되 과세시점만 연기하는 의미라면 현행 취득가액 차감방식이 아닌 최초 양도시 과세하지 않은 양도세액을 대체 취득자산 양도시 양도세액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을 것임

○ 대토 전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각각 적용할 경우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세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이연하는 2007.10월 개정전 과세이연 제도하에서는 대토 양도시까지 사후관리도 곤란

- 대토 보상은 강제적 수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양도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하고 중과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 점도 감안함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는 수용시 중과대상으로서 적용이 배제됨에도 대토 양도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할 경우 과도한 혜택
 - 수용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미리 적용한 후, 대토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대토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적용

III.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혁신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가. 개정취지

종 전	개 정
<p>○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p> <p><지원요건> 이전대상 지방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외 지역으로서 다음을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p>※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공장 취득후 2년내 기존공장 양도 · 기존공장 양도후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년)내 신공장 취득 <p><지원내용> · 공장대지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p>	<p>○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요건> · <지원내용>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규정 - 단, 이전대상 지방지역 조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년 1월 1일 이후 이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공익사업 목적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가. 개정취지

공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용으로 인한 공장 이전시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내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에 준하여 규정하였다.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사후관리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내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에 준하여 규정하였다.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지원내용으로서 익금불산입 금액(내국법인)·분할 납부할 양도세액(거주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개인 :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이전대상 지방의 범위 :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을 제외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 공장이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이전 :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 - 후 이전 :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 ※ 부득이한 사유 : 공사의 인·허가 지연, 용지보상 등에 관한 소송진행, 기존공장 이전장소의 미확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종 전	개 정
<신 설>	<p><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 익금불산입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① (기존공장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 결손금) ② (신공장 취득가액 ÷ 기존공장 양도가액) ○ 거주자 : 분할납부할 양도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① 기존공장 양도차익 ② (신공장 취득가액 ÷ 기존공장 양도가액) ※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 ※ ②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기존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공장을 대체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의함 <p><사후 관리(공장이전 방법 위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전액 -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p><제출 서류(분할과세 신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차익 명세서 · 분할익금산입 조정명세서 · 이전(예정)명세서 제출 - 거주자는 과세표준 신고시 분할납부 적용 신청서 · 이전(예정)명세서 제출 <p><일몰 기한> : 2009년 12월 31일</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년 1월 1일이후 이전 · 양도하는 분터 적용한다.

IV. 20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가. 개정취지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증가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아니하므로 일몰도래에 맞춰 폐지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5.22 ~ 1999. 6.30, 1999. 7. 1 ~ 1999. 12.31, 2000. 11. 1 ~ 2001. 5.22, 2001. 5.23 ~ 2002. 12.31, 2003. 1. 1 ~ 2003. 6.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 신축주택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고가(고급) 주택은 감면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함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출자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가. 개정취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출자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로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이익에 대한 비과세는 심각한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고, 일반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위험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정상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거주자의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는 과도한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무상태의 법인(최근 2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법인,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의 1.5배인 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구조조정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CRC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p> <p>- 일몰시한 : 2007. 12. 31</p>	<p>- 폐지</p>

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가. 개정취지

2005년말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 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시 세 제지원</p> <p>- 요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에 채무면제액, 부동산 양도에 따른 채무상 환계획 및 양도일부터 3월내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 는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 <p>- 사후관리 :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양도소득세 추징 및 이자가산</p> <p>- 일몰시한 : 2007. 12. 31</p>	<p>- 폐 지</p>

4. 중소기업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가. 개정취지

2005년말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시 세제지원</p> <p>- 요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에 자산증여 내용·채무상환계획 및 증여일부터 3월내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중소기업에 증여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 결손법인인 중소기업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 <p>- 사후관리 :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양도소득세 추징 및 이자가산</p> <p>- 일몰시한 : 2007. 12. 31</p>	<p>- 폐 지</p>

V. 기타 개정사항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가. 개정취지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은 농어촌주택 가격현실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하고, 도시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p>※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외 지역 · 면적 : 주택의 연면적 150㎡(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16㎡) 이내, 대지 660㎡ 이내 	<p>○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 취득가격 요건 상향조정(7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2.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 개정취지

무역조정기업이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제도를 도입 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p> <p>·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법인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p>	<p>○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p> <p>- 양도소득세 50% 감면</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경위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4월에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① 기업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업종)
- 지원요건 :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 · 생산량이 25%이상 감소
- 지원내용 :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 기술컨설팅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2천 4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 지원요건 : 실직 또는 2월 이상 평균근로시간이 30% 이상 감소
- 지원내용 : 전직지원서비스(1인당 300만원한도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 100% 지급)

3.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재촌요건 개선

가. 개정취지

행정구역간 거리 편차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기준의 불형평 문제를 보완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요건</p> <p>-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p> <p>※ 재촌요건이 적용되는 농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도</p> <p>•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p> <p>•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 토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p>	<p>- 거리기준 추가</p> <p>•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p> <p>※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 허가 기준</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양도소득세 감면시 예외인정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범위 개선

가. 개정취지

개발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보상지연 등으로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 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보상지연이 사업시행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 명백히 사업시행자 측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 :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으로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적용 ※ 대규모 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택지개발·대지조성사업은 10만㎡) 이상 ※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 관련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시행자 측 귀책사유(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 토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지 교환·분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